

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사 업무개정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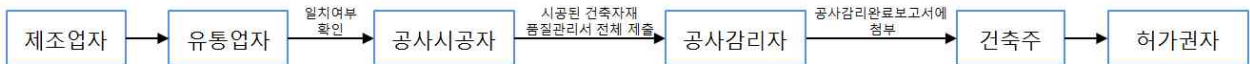
□ 감리업무(품질관리서 제출)

1) 대상자재 : 복합자재, 단열재, 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방화댐퍼, 내화충전구조

* 건축법 제52조의4,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4,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

2) 품질관리서 제출

①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자는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서 대장 및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함



②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확인 후 서명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

* 건축법시행령 제61조의4제2항~제4항,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제1호~제7호(붙임 1)

③ 공사감리 시 품질관리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사본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손쉽게 진위여부 확인 가능

(단, 2019.10.24.부터 신규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자재부터 등록되므로 자재 전체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1~2년의 기간 소요)

3) 품질관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

① 복합자재

-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
- 강판의 두께, 도금종류, 도금부착량이 표시된 강판 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

② 단열재

-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

③ 방화문

-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

④ 자동방화셔터

-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

⑤ 방화댐퍼

- 「산업표준화법」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

⑥ 내화충전구조

- 차열성능 및 차열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 사본

*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제3항

□ 설계업무

1) 건축물의 벽·기둥·보·바닥·지붕틀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*을 만족해야 함

*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1] 내화구조의 성능기준(붙임 2)

**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

2) 착공신고 시 제출도서 추가(건축법 시행규칙 [별표4의2], 붙임 3)

도서의 종류	<현행>	<개정안>
	표시하여야 할 사항	표시하여야 할 사항
실내재료마감표	<신설>	외벽 마감재료 및 외단열재
각층 및 지붕평면도	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	방화구획(방화문·자동방화셔터·내화충전구조·방화댐퍼를 포함한다) 계획
입면도	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벽 마감재료	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벽 마감재료
단면도	<신설>	방화구획(방화문·자동방화셔터·내화충전구조·방화댐퍼를 포함한다) 계획
방화구획 상세도	<신설>	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
외벽마감 단면상세도	<신설>	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, 마감재료의 종류(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, 붙임 4)
비고	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	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설계도서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

□ 주요 개정 사항

현 행	개정안
<p>건축법</p> <p>제52조의3(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</p> <p>○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건축자재 : 복합자재</p> <p>②~⑤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건축법</p> <p>제52조의4(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</p> <p>○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건축자재 : <u>마감재료(복합자재, 단열재 포함),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</u></p> <p>②~⑤</p> <p>○ 마감재료, 방화문 등의 성능시험 수행기관의 장은 시험결과 등을 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공</u></p> <p>○ <u>시험결과 등을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재의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</u></p>
<p>건축법 시행령</p> <p>제61조의4(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</p> <p>○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건축자재 : 복합자재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건축법 시행령</p> <p>제62조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①</p> <p>○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건축자재 : 복합자재, 단열재, 방화문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</p> <p>제63조(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. 건설기술용역업자(건진법 제26조, 국토부 고시 기준에 적합 시) 3. KOLAS 인정 시험·검사기관
<p>건축법 시행규칙</p> <p>[별표4의2]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</p> <p>○ 실내재료마감표</p> <p>○ 각 층 및 지붕평면도</p> <p>2) 방화 계획 및 방화벽의 위치</p> <p>○ 입면도(2면 이상)</p> <p>1) 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부마감재료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건축법 시행규칙</p> <p>[별표4의2]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</p> <p>○ 재료마감표 : <u>외벽 마감재료 및 외단열재 내용 신설</u></p> <p>○ 각 층 및 지붕평면도</p> <p>2) 방화구획(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뎀퍼를 포함) 계획</p> <p>○ 입면도(2면 이상)</p> <p>1) 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<u>외벽마감재료</u></p> <p>○ 단면도(중·횡단면도)</p> <p>3) 방화구획(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뎀퍼를 포함) 계획</p> <p>○ 방화구획 상세도</p> <p>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뎀퍼 설치부분 상세도</p> <p>○ 외벽마감 단면상세도</p> <p>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, 마감재료의 종류</p> <p>*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</p>
<p>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</p> <p>제24조의3(복합자재의 품질관리) ①</p> <p>○ 복합자재품질관리서 : 별지 제1호서식</p> <p>②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첨부서류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</p> <p>제24조의3(건축자재 품질관리서) ①</p> <p>○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건축자재 :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뎀퍼</p> <p>② 품질관리서 : 별지 제1호부터 제7호의 서식</p> <p>③ 자재별 품질관리서 첨부서류</p>
<p>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</p> <p>제6조(시험성적서) ②</p> <p>○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년</p> <p>〈신 설〉</p>	<p>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</p> <p>제6조(시험성적서) ②</p> <p>○ 시험성적서 : [별표2]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 (시험대상품, 시험규격, 시험대상품, 유효기간 등)</p> <p>제9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</p> <p>○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</p>
<p>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</p> <p>제3조(성능기준)</p> <p>○ 내화구조 적용 부위 : 벽·기둥·보·바닥 또는 지붕틀</p> <p>〈신 설〉</p>	<p>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</p> <p>제3조(성능기준)</p> <p>○ 내화구조 적용 부위 : 벽·기둥·보·바닥·지붕틀 또는 지붕</p> <p>제24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</p> <p>○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</p>
<p>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</p> <p>제9조(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)</p> <p>○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</p>

■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
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

번호	반입 날짜	자재종류	자재명칭	로트번호(제품번호)	공급물량(단위표시)	비고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	년	월	일	
작성자(시공사)				(서명 또는 인)
검토자(감리자)				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는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함께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의 내용과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 검토하고,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품질관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복합자재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
	주소		(전화번호 :)		
공사현장	현장명				
	대지위치	지번			
자재 개요	난연성능	<input type="checkbox"/> 불연 <input type="checkbox"/> 준불연 <input type="checkbox"/> 난연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성적서 번호	
	강판두께 0. mm	도금종류 _____ 도금부착량 _____ g/m ²	품질검사증명서 발급기관	증명서 번호	
자재 제조업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_____ m ² 를 제조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로트번호				
	주소	(전화번호 :)			
자재 유통업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_____ m ²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로트번호				
	주소	(전화번호 :)			
공사 시공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복합자재 _____ m ² 를 인수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주소	(전화번호 :)			
공사 감리자	성명	자격번호	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 함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		
	사무소명	신고번호			
	사무소주소	(전화번호 :)	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제출인(건축주) _____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 : 가.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,
나. 강판의 두께,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복합자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단열재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
	주소			(전화번호 :)	
공사현장	현장명				
	대지위치		지번		
자재 개요	난연성능	<input type="checkbox"/> 불연 <input type="checkbox"/> 준불연 <input type="checkbox"/> 난연	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성적서 번호
	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외단열 <input type="checkbox"/> 내단열	겉면 정보 표기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단열재 밀도(단위:K)
자재 제조업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단열재 _____ m ² 를 제조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로트번호	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
자재 유통업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단열재 _____ m ² 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로트번호	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
공사 시공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단열재 _____ m ² 를 인수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	
공사 감리자	성명	자격번호		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(서명 또는 인)	
	사무소명	신고번호			
	사무소주소 (전화번호 :)		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제출인(건축주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 :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
- 이 품질관리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인 단열재에 대해 작성합니다.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단열재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방화문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	
	주소		(전화번호 :)			
공사현장	현장명					
	대지위치	지번				
자재 개요	<input type="checkbox"/> 갑종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차열 1시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차열 30분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	성적서 번호
	<input type="checkbox"/> 을종	<input type="checkbox"/> 비차열 30분				
	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피난계단		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대피공간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문짝 규격(가로 X 세로 X 두께) _____ mm						
자재 제조업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문 _____ 개를 제조하였음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소속	년	월
	로트번호			성명	일 (서명 또는 인)	
	주소	(전화번호 :)				
자재 유통업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문 _____ 개를 공사시공자에게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소속	년	월
	로트번호			성명	일 (서명 또는 인)	
	주소	(전화번호 :)				
공사 시공자	성명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문 _____ 개를 인수하였음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소속	년	월
	주소	(전화번호 :)		성능을 갖춘 방화문을 적정하게 시공하였음		
공사 감리자	성명	자격번호		성능을 갖춘 방화문이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		
	사무소명	신고번호		소속	년	월
	사무소주소	(전화번호 :)		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 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(건축주)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: 차열성능 및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사본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방화문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
	주소			(전화번호 : _____)	
공사현장	현장명				
	대지위치		지번		
자재 개요	비차열 <input type="checkbox"/> 1시간	셔터 규격(가로 X 세로 X 두께) _____ mm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성적서 번호	
	일체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에 셔터 여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			
자재 제조업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_____ 개를 제조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	회사명		법인등록번호		
	로트번호				
	주소		(전화번호 : _____)		
자재 유통업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_____ 개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	회사명		법인등록번호		
	로트번호				
	주소		(전화번호 : _____)		
공사 시공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능을 갖춘 방화셔터 _____ 개를 인수하였음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	회사명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		(전화번호 : _____)		
공사 감리자	성명		자격번호		성능을 갖춘 방화셔터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 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	사무소명		신고번호		
	사무소주소		(전화번호 : _____)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제출인(건축주) _____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 : 비차열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사본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자동방화셔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내화충전구조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		
	주소						
	(전화번호 :)						
공사현장	현장명						
	대지위치	지번					
자재 개요	성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차열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염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성적서 번호			
	용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설비관통부 (개) <input type="checkbox"/> 선형조인트 (m)					
자재 제조업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_____ 개 _____ m를 제조하였음		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		
	로트번호	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서명 또는 인)					
	주소				(전화번호 :)		
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_____ 개 _____ m를 공사시공자에게 납품하였음					
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			
로트번호	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서명 또는 인)						
주소				(전화번호 :)			
공사 시공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 _____ 개 _____ m를 인수하였음		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				
	주소	(전화번호 :)			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를 적정하게 시공하였음		
							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서명 또는 인)
성명	자격번호	성능을 갖춘 내화충전구조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					
사무소명	신고번호						
사무소주소	(전화번호 :)			소속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서명 또는 인)			
(전화번호 :)					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_____ 년 _____ 월 _____ 일
제출인(건축주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: 차열성능 및 차염성능이 표시된 내화충전구조 시험성적서 사본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내화충전구조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방화댐퍼 품질관리서

제출인 (건축주)	성명(법인명)					
	주소			(전화번호 :)		
공사현장	현장명					
	대지위치	지번				
자재 개요	방연성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시험성적서 발급기관	성적서 번호		
	철판 두께	_____ mm				
자재 제조업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_____ 개를 제조하였음	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소속	년	월	
	로트번호	일 (서명 또는 인)				
	주소					
(전화번호 :)						
자재 유통업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_____ 개를 공사시공자에게	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소속	년	월	
	로트번호	일 (서명 또는 인)				
	주소					
(전화번호 :)						
공사 시공자	성명	생년월일	성능을 갖춘 방화댐퍼 _____ 개를 인수하였음			
	회사명	법인등록번호	소속	년	월	
	주소	일 (서명 또는 인)				
(전화번호 :)						
공사 감리자	성명	자격번호	성능을 갖춘 방화댐퍼가 적정하게 시공하였음을 확인함			
	사무소명	신고번호	소속	년	월	
	사무소주소	일 (서명 또는 인)				
(전화번호 :)						

「건축법」 제52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4호 및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제출인(건축주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비고

- 첨부서류: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
-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는 첨부된 시험성적서의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날인해야 합니다.
-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, 건축주는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방화댐퍼의 납품일 또는 시공완료일 등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 서식을 각각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붙임 2

내화구조의 성능기준

■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1]

내화구조의 성능기준(제3조제8호 관련)

1. 일반기준

(단위 : 시간)

용도		구성 부재		벽						보·기둥	바닥	지붕·지붕틀
				외벽			내벽					
				내력벽	비내력벽		내력벽	비내력벽				
연소우려가 있는 부분	연소우려가 없는 부분	간막이벽	승강기·계단실의 수직벽									
용도구분		용도규모 층수/최고 높이(m)										
일반시설	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위락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(정비공장 제외),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, 방송통신시설, 발전시설, 묘지 관련 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	12/50	초과 이하	3	1	0.5	3	2	2	3	2	1
			이하	2	1	0.5	2	1.5	1.5	2	2	0.5
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0.5	
주거시설	단독주택, 공동주택, 숙박시설, 의료시설	12/50	초과 이하	2	1	0.5	2	2	2	3	2	1
			이하	2	1	0.5	2	1	1	2	2	0.5
	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0.5
산업시설	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, 자연순환 관련 시설	12/50	초과 이하	2	1.5	0.5	2	1.5	1.5	3	2	1
			이하	2	1	0.5	2	1	1	2	2	0.5
		4/20 이하	1	1	0.5	1	1	1	1	1	1	0.5

2. 적용기준

가. 용도

- 1)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 표의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.
- 2)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제1호에 따른 구성 부재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3) 용도규모에서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에 따른다. 다만, 승강기탑, 계단탑, 망루, 장식탑,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.

나. 구성 부재

- 1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말한다.
- 2) 외벽 중 비내력벽으로서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.
- 3) 내벽 중 비내력벽인 간막이벽은 건축법령에 따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벽을 말한다.

다. 그 밖의 기준

- 1)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·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- 2)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.

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(제14조제1항 관련)

분 야	현 행		개 정 안	
	도서의 종류	내 용	도서의 종류	내 용
1. 건축	가. 도면 목록표	공중 구분해서 분류 작성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안내도	방위, 도로,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개요서	1) 개요(위치·대지면적 등) 2) 지역·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) 건축물의 규모(건축면적·연면적·높이·층수 등) 4)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) 주차장 규모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라. 구적도	대지면적에 대한 기술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마. 실내재료마감표	1) 바닥, 벽, 천정 등 실내마감 2)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, 규격, 재질, 질감,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	마. 재료마감표	1)----- 2) 외벽 마감재료 및 외단열재
	바. 배치도	축척 및 방위, 건축선,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,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,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, 대지의 고저차, 부대시설물과의 관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사. 주차계획도	1)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,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)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아. 각 층 및 지붕 평면도	1) 기둥·벽·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, 계단, 승강기 위치 2)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	<현행과 같음>	1)----- ----- 2) 방화구획(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댐퍼를 포함한다) 계획
	자. 입면도(2면 이상)	1) 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부마감재료 2)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, 규격, 재질, 질감,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)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 계획(크기·위치)	<현행과 같음>	1) 주요 내외벽,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, 외벽마감재료 2)----- ----- 3)----- -----
	차. 단면도(중·횡 단면도)	1) 건축물 최고높이, 각 층의 높이, 반자높이 2) 천정 안 배관 공간,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<신 설>	차. 단면도(중·횡 단면도)	1)----- ----- 2)----- ----- 3) 방화구획(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댐퍼를 포함한다) 계획

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(제14조제1항 관련)

분 야	현 행		개 정 안	
	도서의 종류	내 용	도서의 종류	내 용
	카. 수직동선상세도	1) 코아(Core) 상세도(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) 2) 계단 평면·단면 상세도 3) 주차경사로 평면·단면 상세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타. 부분상세도	1) 지상층 외벽 평면·입면·단면도 2)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파. 창호도	창호 일람표, 창호 평면도, 창호 상세도, 창호 입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하. 건축설비도	냉방·난방설비, 위생설비, 환경설비, 정화조,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<신 설>	<신 설>	거. 방화구획 상세도	방화문, 자동방화셔터, 내화충전구조,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
	<신 설>	<신 설>	너. 외벽마감 단면 상세도	외벽 및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, 마감재료의 종류(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함)
2. 일반	가. 시방서	1) 시방내용(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) 2) 흙막이공법 및 도면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3. 구조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기초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구조 평면·입면·단면도(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)	1)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) 주요부분의 상세도면(배근상세, 접합상세,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) 3) 구조안전확인서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라. 구조가구도	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마. 앵커(Anchor)배치도 및 베이스플레이트(Base Plate) 설치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바. 기둥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사. 보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아. 슬래브(Slab)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자. 옹벽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차. 계단배근 일람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카. 주심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
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(제14조제1항 관련)

분 야	현 행		개 정 안	
	도서의 종류	내 용	도서의 종류	내 용
4. 기계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장비일람표	규격, 수량을 상세히 기록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장비배치도	기계실,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 방안 계획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라. 계통도	공조배관 설비, 덕트(Duct) 설비, 위생 설비 등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마. 기준층 및 주요 층 기구 평면도	공조배관 설비, 덕트 설비, 위생 설비 등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바. 저수조 및 고가수조	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사. 도시가스 인입 확인	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5. 전기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배치도	옥외조명 설비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계통도	1) 전력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	2) 조명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라. 평면도	조명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
6. 통신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배치도	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계통도	1)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	2)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	3)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	4) CCTV설비 계통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라. 평면도	1)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	2)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3)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
4) CCTV설비 평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	
7. 토목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각종 평면도	주요시설물 계획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토지굴착 및 옹벽도	1)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) 흙막이 구조(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
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(제14조제1항 관련)

분 야	현 행		개 정 안	
	도서의 종류	내 용	도서의 종류	내 용
		한다) 3) 단면상세 4) 용벽구조		
	라. 대지 중·횡단 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마. 포장계획 평면 · 단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바. 우수·오수 배 수처리 평면· 중단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사. 상하수 계통도	우수·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 치 및 상세도,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, 상수도 인입계획, 정 화조의 위치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아. 지반조사 보고 서	시추조사 결과, 지반분류, 지반 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(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 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, 「건축물의 구 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 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, 지반조 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 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)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8. 조경	가. 도면 목록표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나. 조경 배치도	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,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다. 식재 평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	라. 단면도		<현행과 같음>	<현행과 같음>

비고

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
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

비고

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
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
당시 제출한 설계도서로서 변경사항이 없
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다.

건축법**제52조(건축물의 마감재료)**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 12. 29., 2013. 3. 23.>

건축법 시행령**제61조(건축물의 마감재료)**

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0. 12. 13., 2011. 12. 30., 2013. 3. 23., 2015. 9. 22.>

1.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)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.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나. 공장(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)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

2.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

[전문개정 2008. 10. 29.]

[제목개정 2010. 12. 13.]